

취업마일리지 장학제도 운영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제25조에 의거 재학생이 각종 교내외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및 수료 등 자기개발 성과에 기준별 취업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승인 및 부여하고, 총 합산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각종 대학정책사업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일리지”란 본 장학제도상에 일정 기준에 충족하여 부여하는 점수를 의미한다.
2. “승인요청”이란 학생이 마일리지를 부여받기 위해 각종 제 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교에 마일리지 부여를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승인요청 제출”이란 학생이 마일리지를 부여받기 위해 각종 제 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승인”이란 학생이 제출한 각종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기준에 맞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장학금신청”이란 적립된 마일리지가 지급요건에 충족하여 학생이 학교에 장학금의 지급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참가대상) 이 지침은 재학생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인 국제교류학생
2. 휴학생

제4조(인정항목 및 배점) 취업마일리지 인정항목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활동인정기간) 활동의 인정기간은 재학 중의 활동만 인정하며 입학 이전, 편입학 이전 및 휴학 중의 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참가자 의무) 취업마일리지 장학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장학의 목적, 각종 세부 승인기준, 지급절차 및 기간 등을 숙지하여 원활한 취업마일리지 장학사업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같은 사안의 이중수혜, 근거서류 위변조 등 불성실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교내 장학상벌위원회를 통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장학금 지급기준

제7조(성적 및 학점기준) 학기성적 및 이수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시행시기) ① 장학기간은 1년 단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기준 및 마일리지 부여기준, 마일리지당 장학금액 등은 1년을 주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집행시기는 매학기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집행해야할 경우, 장학상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9조(마일리지 승인 신청) ① 마일리지를 승인받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된 기간 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서류를 제출(업로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근거서류가 미비하여 승인하기 어려운 경우 승인거부 될 수 있다.

③ 같은 사안으로 이중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신청기간이 지난 승인신청 및 승인재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마일리지 승인) ① 주무부서는 신청 된 승인요청을 기준에 맞게 심사 및 승인 처리하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② 같은 사안으로 이중승인을 할 수 없다.

③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제11조(최소 이수마일리지) ① 최소 이수마일리지는 100마일리지로 한다.

②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영역별 최소 이수마일리지의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취업 마일리지 장학금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의 제한) ① 본 장학의 총지급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장학상별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취업 마일리지는 졸업과 동시에 소멸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을 신청한 자의 취업마일리지 내역을 점검하여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마일리지 당 지급금액은 공지를 통해 사전 통보해야 하며, 학교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③ 취업마일리지 장학금은 우리 대학교 취업 마일리지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학년이 높은 순 - 마일리지 취득점수가 높은 순 - 취득학점이 많은 순 - 성적이 높은 순)으로 지급한다.

④ 단, 학교 내부사정으로 취업마일리지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3장 승인영역 및 세부 승인기준

제15조(승인영역 및 세부 승인기준) 승인영역 및 세부 승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취업마일리지는 2016학년도 1학기 프로그램 참여 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시행일 : 2017. 10. 23)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 2017. 11. 1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 2019. 10.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 : 2021. 08. 27)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취업마일리지 인정 항목 및 배점

구 분		1회 마일리지	최대 인증	최대 배점	비 고
'취업 준비	취업특강(직무교육) 참여	5	10	50	
	취업아카데미(취업캠프)	10	2	20	
	취창업스터디(학과)	10	2	20	
	취창업직무스터디	15	2	30	
취업 정규 교과 수강	취업(창업)교과목	15	3	45	취·창업지원팀 인정교과목 (학점 인정시 부여)
	현장실습(단기)	20	2	40	
	현장실습(장기)	40	2	80	
취업 자격증 교육 참여	국가자격증(정보화)	10	2	20	취·창업지원팀 주관 교육 수료자
	온라인 자격증	10	2	20	
	기타 자격증	10	2	20	
취업 자격증 취득	정보화 자격증 취득	20	2	40	
	온라인 자격증 취득	20	2	40	
	외국어 자격증 취득	20	2	40	
	기타 자격증 취득	20	2	40	
실질적 취업활동 (정부고용정책)	워크넷 구직등록	10	1	10	
	취업상담프로그램	10	3	30	
	인턴(단기)	20	2	40	
	인턴(장기)	40	2	80	
	취업박람회 참가	5	5	25	
	취업설명회 참가	5	5	25	
	고용정책 교육/홍보	5	10	50	
	취창업관련 정부사업 참여	20	5	100	
계		340	70	865	

- 1) 취업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급 가능
- 2) 100마일리지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하며 최대 장학금은 500마일리지임
- 3) 취업 마일리지는 졸업과 동시에 소멸함
- 4) 휴학 중 취업마일리지 항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 취업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함
- 5) 실질적 취업활동(정보고용정책)/취창업관련 정부사업 참여 : K-Digital Training 사업 포함
- 6) 취업준비 및 취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개발처장이 별도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과할 수 있음(최소 5점 ~ 최대 20점, 4회, 최대배점 20점)

<별표 2> 취업마일리지 승인내용 및 세부 승인기준

구 분		승인내용	비 고
취업 준비	취업특강 (직무교육) 참여	취업특강 및 기업 직무교육 참여 (진로지도연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브런치 특강, 직무교육 등)	출석부 근거
	취업아카데미 (취업캠프)	취업아카데미(취업캠프) 참여	출석부 근거
	취창업스터디(학과)	취·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취업스터디 참여	최종 활동 수료자 기준
	취창업직무스터디	취·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직무스터디 참여	
취업 정규 교과 수강	취업(창업)교과목	취·창업지원팀 운영 정규교양강좌 수강 신청(맞춤형 취업설계, 맞춤형 취업전략, 청년창업성공비결 등)	학점인정 시 마일리지 부여
	현장실습(단기)	취·창업지원팀 운영 단기(방학중) 현장실습	
	현장실습(장기)	취·창업지원팀 운영 장기(12주 이상) 현장실습	
취업 자격증 교육 참여	정보화 자격증	취·창업지원팀 운영 자격강좌 참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Auto-CAD1·2급, ERP정보관리사, 카티아, MOS 등)	출석부 근거 (70% 이상 참여자)
	온라인 자격증	취·창업지원팀 운영 자격강좌 참여 (교육학,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2급, CS 관리사, 직업상담사2급, 사회복지사1급, 원 산지관리사 등)	
	기타 자격증	취·창업지원팀 운영 기타 자격증 교육과정 참여 (6시그마, SMAT, 3D프린팅, CAP+ 등)	
취업 자격증 취득	정보화 자격증 취득	취·창업지원팀 운영 정보화 자격증 취득	자격증 사본 근거
	온라인 자격증 취득		
	외국어 자격증 취득	공인어학시험(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 성적표 제출자(단, 한자 제외) * 각 언어 영역별 4등급 이상 1회에 한하며 동일언어영역에 대해 2번 이상의 공인어학 성적 제출 시 상위 한 가지만 인 정하며 1회 인정받은 후에 등급이 상승된 경우 향상된 경우 추가 1회 인정 * 2021.03.01. 이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에 대해 인정	성적표 사본 근거 <별표 3>을 기준으로 인정
	기타 자격증 취득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자격증 취득 (6시그마, SMAT, 3D프린팅, CAP+ 등)	자격증 사본 근거

실질적 취업활동 (정부고용 정책)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확인증 제출	
	인턴(단기)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인턴 참가	인턴 참가자
	인턴(장기)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인턴(2개월 이상) 참가	
	취업박람회 참가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취업박람회 참가 -학과 자체 참여시 근거서류 및 사진 제출 시 인정	출석부 기준
	취업설명회 참가	취·창업지원팀에서 인정하는 취업설명회 참가	출석부 기준
	고용정책 교육/홍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고용정책 설문 및 홍보활동 참가	참가자 명부
	취창업관련 정부사업 참여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취창업관련 정부사업 참여	정부사업 참가자

<별표 3> 외국어 자격증 마일리지 인정 세부 기준

등급	영어 영역									일본어 영역		중국어 영역
	토익	토익 스피킹	OPIc	TOEFL (CBT)	TOEFL (IBT)	(구) TEPS	TEPS	G-TELP	IELTS	JPT	JLP T	HSK
1 등급	850 이상	Level6 150 이상	AL 이상	247 이상	99 이상	700 이상	386 이상	Level2 85 이상	7.5 이상	760 이상	N1 이상	6급 이상
2 등급	800 이상	Level6 140 이상	IH 이상	233 이상	91 이상	637 이상	348 이상	Level2 75 이상	7.0 이상	720 이상		5급 이상
3 등급	730 이상	Level6 130 이상	IM3 이상	220 이상	83 이상	580 이상	315 이상	Level3 85 이상	6.5 이상	680 이상	N2 이상	X
4 등급	650 이상	Level5 120 이상	IM2 이상	203 이상	75 이상	521 이상	281 이상	Level3 75 이상	6.0 이상	640 이상	N3 이상	X

※ 2021.03.01 이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에 대해 인정